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제도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이며,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구 분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산안법 시행규칙 제73조)	요양급여 신청 대상(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휴업일수 3일 이상 발생 [3일]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치료 불가능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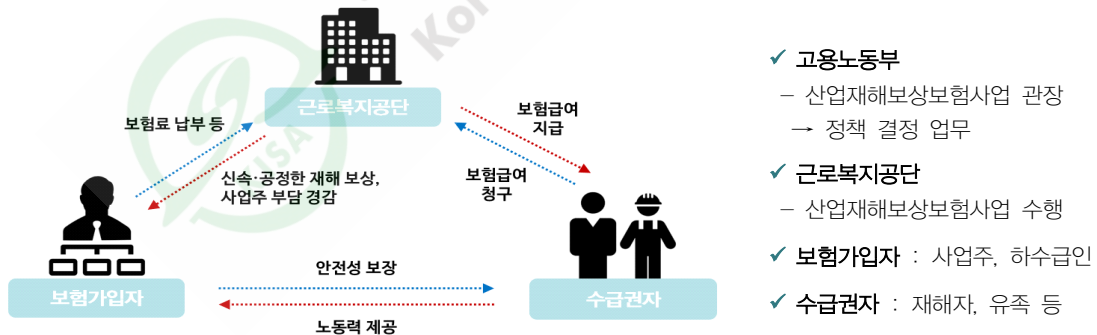
○ 적용범위

- ① 적용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② 적용 제외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산재보험의 가입

당연 가입	임의 가입	의제(擬制)*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의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 ✓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 가입→ 적용 제외: 임의가입으로 간주 ✓ 근로자 미고용 : 1년간 가입 유지

○ 산재보험의 수행체계



2.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참조1]가 없는 경우는 제외

✓ 업무의 범위

- ◎ 사업주 지배·관리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담당업무
- ◎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업무의 개시 및 계속에 필요한 행위를 포함

* 의제(擬制) : [법률]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를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예를 들어,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됨. 여기서는 의무 가입자가 적용 제외가 되더라도 임의 가입으로 보는 것을 의미함.

▶ [참조1]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란?

-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원인(사고)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인과관계 입증책임**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재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
- **인과관계 판단기준**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2.1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업무상 사고 유형

-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 준비 및 마무리 행위,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생리적 필요 행위
 -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행위
-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등")의 결함이나 사업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제외대상
 -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轉屬)**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행사에 근로자가 참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무시간으로 인정, 사업주의 참가 지시·사전승인·관례적 인정 등으로 참가한 경우
 - 체육대회, 회식 등
- 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사적 행위, 업무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를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

2.2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 업무상 질병 유형

-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요인(유해 방사선, 열사병, 저체온증,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 사용 등), 화학적 요인(분진, 자극성 물질 등), 생물학적 요인(병원체, 동물의 사체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근골격계 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업무시간,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전속(轉屬) : [법률]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림. ex) 전속 계약 등

-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 포함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 업무상 질병(진폐증 제외)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 ③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 원인 :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2.3 출퇴근 재해

- 출퇴근 정의 :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연고지, 비연고지, 일시적 주거 등 모두 포함)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할 경우 **업무상 사고**이다.
 -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참조2]**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

▶ [참조2]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업종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개인택시운송사업 ▪ 퀵서비스업자
- 교통수단별 주요 재해발생 유형 [자가용은 대부분 일반적인 교통사고라 제외]



지하철, 기차

- ✓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다가 발이 끼이거나 걸려 넘어짐
- ✓ 역사 내 계단 등에서 뛰거나 걷다가 넘어짐
- ✓ 무리한 탑승을 하려다 승강기 도어 또는 스크린 도어에 끼임
- ✓ 역사 내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으로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부딪힘 또는 넘어짐



버스

- ✓ 버스 승·하차 시 급출발 또는 급정지에 따른 넘어짐
- ✓ 버스 탑승 중 손잡이를 잡지 않아 넘어짐
- ✓ 버스 도어 개폐 시 부딪힘, 끼임
- ✓ 버스 하차 시 버스 옆으로 달려오던 이륜차와 부딪힘
- ✓ 버스 승강장이 아닌 차도로 내려와서 버스를 탑승하려다 버스에 부딪힘



이륜차
(자전거, 오토바이)

- ✓ 운행 중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 ✓ 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넘어짐
- ✓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 차량 등에 부딪힘
- ✓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
 - ※ 승차용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필수



도 보

- ✓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으로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부딪힘 또는 넘어짐
- ✓ 보행 중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 ✓ 이어폰 착용에 따른 주변 경고를 미인지로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과 부딪힘
- ✓ 무단횡단 등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① 음주운전
 -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경우 : **업무상 재해 불인정** ※ 면허취소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p>진폐에 따른 보험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가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인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 ※ 분진작업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폐보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폐장해연금(연 24~132일분) + 기초연금 - 기초연금 = 최저임금액 60% × 365일 진폐유족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 ※ 유족급여의 유족보상연금 초과 금지
<p>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보험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신설 2022.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해등급 판정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후 산정기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해급여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최저 금액 - 장례비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최저 금액

5. 산재보험과 타 보상제도와와의 관계

구 분	내 용									
<p>국민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의 성격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 쪽에서는 급여를 그만큼 조정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상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p>건강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 급여지급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 의거 중복 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요양급여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법의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따른다. -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가 존재한다.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를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자가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담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p>자동차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 반드시 자동차보험약관 검토 산재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를 받은 이후에 자동차보험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그 초과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동일한 산재 보험급여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산재 보험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차액만이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제도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이 중보상 문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상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p>근로자 재해보험 (근재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재보험 :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보상금(위자료, 소송비용, 휴업급여 차액분 등)을 회사가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table border="1" data-bbox="364 1583 1282 1693"> <thead> <tr> <th>구 분</th> <th>산재보험</th> <th>근재보험</th> </tr> </thead> <tbody> <tr> <td>가입의 강제성</td> <td>○(가입요건 충족 시)</td> <td>×</td> </tr> <tr> <td>보상 주체</td> <td>근로복지공단</td> <td>민간 손해보험사</td> </tr> </tbody> </table>	구 분	산재보험	근재보험	가입의 강제성	○(가입요건 충족 시)	×	보상 주체	근로복지공단	민간 손해보험사
구 분	산재보험	근재보험								
가입의 강제성	○(가입요건 충족 시)	×								
보상 주체	근로복지공단	민간 손해보험사								
<p>일반 사(私)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별도로 가입한 생명보험·손해보험·화재보험·공제조합법에 의한 유족연금, 실업보험 등의 급여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이라는 별도의 원인에서 기인하므로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과 중복·조정 문제는 없으며, 약관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교육일시	년 월 일 : ~ : (시간)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시행 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별표5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 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대 상 인 원				【교육 참석자 명단】 참조
	참 석 인 원				
교육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교육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2. 업무상의 재해 3. 요양급여 신청절차 4. 보험급여 5. 산재보험과 타 보상제도와의 관계				
교육장소 및 실시자	교육장소	직 명		성 명	

< 교육 참석자 명단 >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